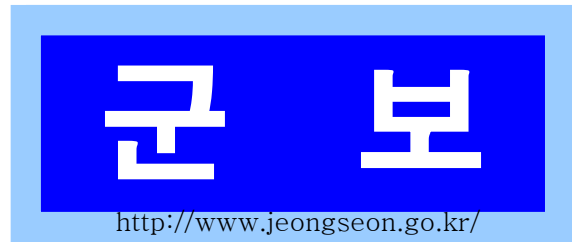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33호 2011. 1. 5.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0-168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10-169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8
- 정선군고시 제2010-171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10
- 정선군고시 제2010-172호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고시..... 11
- 정선군고시 제2010-177호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2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0-720호 2011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14
- 정선군공고 제2010-738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19
- 정선군공고 제2010-739호 2011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20
- 정선군공고 제2010-743호 사회복지법인 강원랜드복지재단 2011년 예산편성 현황 공고.. 22
- 정선군공고 제2010-752호 압류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26
- 정선군공고 제2010-753호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 정선군공고 제2010-754호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3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10-168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0.

정 선 군 수

지적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m)	경위도	
	X(m)	Y(m)		경도(L)	위도(B)
지적도근점 1500~1657		첨		부	
기 준 점 원 명	동 부 원 점				
소 재 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일원				
측 량 연 월 일	2010. 5. 10.				
측량성과보관장소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비 고	신설설치				

지적도근점(1500~1657)

일련 번호	기준점명	평면직각중형선수치		설치일자	설치 구분	표지구분	기준점 소재지
		중선좌표	형선좌표				
1	1500	427580.45	181148.4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14-1
2	1501	427395.14	181093.5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89-5
3	1502	427110.73	181135.3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49-1
4	1503	426982.53	181162.0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67-3
5	1504	426839.2	181168.2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63-2
6	1505	426709.27	181157.1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25-1
7	1506	426569.52	181029.1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91-1
8	1507	426463.12	180959.2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08-1
9	1508	426362.04	180934.10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54-1
10	1509	426306.19	180951.1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54-1
11	1510	426246.01	181013.0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306
12	1511	426218.91	181078.8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50-9
13	1512	426189.72	181166.9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54-1
14	1513	426160.6	181341.10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306
15	1514	426265.89	181532.8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306
16	1515	426197.18	181678.8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28-3
17	1516	426167.46	181692.3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산205-2
18	1517	425941.19	181838.2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03
19	1518	425803.15	181827.2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산198-1
20	1519	425670.87	181803.2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산202-1
21	1520	425484.87	181780.8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99-1
22	1521	425333.14	181756.0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99-1
23	1522	425079.17	181662.30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99-1
24	1523	424952.3	181668.3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25	1524	424903.14	181726.2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26	1525	424843.99	181951.6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27	1526	424858.83	182050.8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28	1527	424980.36	182220.1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29	1528	425018.13	182311.8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30	1529	424887.4	182389.2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31	1530	424729	182362.4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32	1531	424585.6	182346.7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33	1532	424513.95	182349.3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34	1533	424459.66	182432.5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35	1534	424460.8	182542.3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36	1535	424472.15	182599.4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09-1
37	1536	424611.83	182744.9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452-2
38	1537	424571.54	182976.8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106-25
39	1538	424573.86	183051.6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109-4
40	1539	424524.05	183167.4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80-1
41	1540	424499.59	183327.8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80-1
42	1541	424414.45	183483.0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67-1
43	1542	424304.38	183473.7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23-3
44	1543	424189.09	183452.6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94-5
45	1544	424112.86	183409.4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94-5
46	1545	424005.61	183278.2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45-3
47	1546	423917.62	183169.8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43-2
48	1547	423871.78	183220.0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41-1
49	1548	423837.42	183281.6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40-1
50	1549	423694.15	183318.9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38-4
51	1550	423626.9	183348.1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23-1
52	1551	423424.73	182230.6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260-1
53	1552	423316.4	183292.70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290-2
54	1553	423177.45	183327.4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293-7

55	1554	423072.86	183399.3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305-4
56	1555	423021	183488.9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24-2
57	1556	423012.35	183637.8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24-2
58	1557	423048.98	183806.3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11-2
59	1558	423139.78	184090.00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산58-1
60	1559	423026.01	184316.0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516-16
61	1560	422952.06	184456.5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509-9
62	1561	422885.55	184540.1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496-4
63	1562	422776.3	184524.6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706
64	1563	422549.28	184347.5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588
65	1564	422199.68	184261.5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644
66	1565	422188.72	184421.4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647
67	1566	422418.6	184569.4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431-1
68	1567	422615.96	184578.2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477
69	1568	422839.19	184612.9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492-7
70	1569	422797.14	184722.2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494-3
71	1570	422736.09	184889.8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55-5
72	1571	422654.71	185040.3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26
73	1572	422543.94	185104.7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26
74	1573	422381.04	185118.3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26-2
75	1574	422292.85	185089.9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402-5
76	1575	422198.4	185088.0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402-2
77	1576	422152.45	185149.7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399-3
78	1577	422157.42	185251.0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95-1
79	1578	422241.16	185342.2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07-2
80	1579	422171.01	185527.1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00
81	1580	422026.12	185476.7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382-7
82	1581	421932.51	185375.7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382-2

83	1582	421772.99	185345.4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377-2
84	1583	421588.36	185297.2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314-5
85	1584	421427.96	185338.1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312-11
86	1585	421316.94	185471.2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291-4
87	1586	421317.05	185598.6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41-2
88	1587	421277.7	185729.4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44-6
89	1588	421180.25	185853.10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64-5
90	1589	421076.97	185854.7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62-5
91	1590	420982.04	185869.8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60-5
92	1591	420832.12	185778.6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72-3
93	1592	420736.2	185786.8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76-2
94	1593	420646.48	185758.6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82
95	1594	420548.87	185726.0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74
96	1595	420571.73	185609.5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80-1
97	1596	420500.55	185565.4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80-1
98	1597	420393.38	185559.5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84-8
99	1598	420405.66	185434.6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72
100	1599	420263.35	185343.6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84-15
101	1600	420198.72	185189.9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84-17
102	1601	420107.41	185107.3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184-17
103	1602	420020.46	185109.0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직전리 614-12
104	1603	419905.77	185101.0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직전리 104-1
105	1604	419757.09	185089.3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직전리 102-1
106	1605	419703.31	185044.9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직전리 101-1
107	1606	419704.07	184898.3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직전리 144-1
108	1607	419586.39	184876.3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직전리 614
109	1608	419492.36	184853.20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직전리 614
110	1609	420714.21	185942.9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59-1

111	1610	420705.27	186015.8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59-1
112	1611	420621.28	185995.5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59-1
113	1612	420492.36	186019.8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90-1
114	1613	420447.06	186144.9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95-6
115	1614	420395.79	186206.0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53-1
116	1615	420326.31	186157.5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49-1
117	1616	420251.07	186120.8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48-1
118	1617	420078.88	186170.0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산148
119	1618	420113.23	186302.1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252-1
120	1619	420246.71	186427.0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511-2
121	1620	420259.27	186476.1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251-2
122	1621	420100.59	186606.9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250-3
123	1622	420214.29	186702.6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513-3
124	1623	420323.43	186748.3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518-3
125	1624	420353.66	186845.1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518-3
126	1625	420300.86	186916.5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522-7
127	1626	420145.25	186938.0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244-3
128	1627	420086.62	187062.6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530-2
129	1628	420188.18	187233.6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530-2
130	1629	420133.98	187301.2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234-2
131	1630	419983.14	187362.6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601-6
132	1631	419935.87	187435.5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601-6
133	1632	420035.39	187537.7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230-5
134	1633	420046.7	187739.40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440-6
135	1634	420145.65	187906.8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434-5
136	1635	420211.55	188012.80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66-6
137	1636	420113.02	188121.59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422-2
138	1637	419978.26	188206.3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422-9

139	1638	419964.42	188333.4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71-1
140	1639	420020.04	188563.4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83-2
141	1640	419962.69	188676.3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60-1
142	1641	419723.14	188665.6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407-2
143	1642	419535.3	188622.66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32-7
144	1643	419402.84	188547.2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60-1
145	1644	419268.24	188521.2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46
146	1645	419056.37	188639.6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601
147	1646	418965.97	188858.2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601
148	1647	418877.38	189044.92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601
149	1648	418698.72	189141.5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15-1
150	1649	418553.47	189062.6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601
151	1650	418485.39	188956.74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171-14
152	1651	418380.38	188899.9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171-3
153	1652	418338.85	188788.28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171-4
154	1653	418247.41	188572.77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601
155	1654	418063.78	188371.7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601
156	1655	417860.6	188176.93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187-2
157	1656	417666.21	188097.35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194-2
158	1657	417516.23	188031.31	2010.05.10.	신설	표철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193-3

정선군고시 제2010-169호

지 적 측 량 기 준 점 성 과 고 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0.

정 선 군 수

지적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m)	경위도	
	X(m)	Y(m)		경도(L)	위도(B)
지적보조삼각점 보70~보72 지적도근점 1658~1688		첨		부	
기 준 점 원 명	동 부 원 점				
소 재 지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일원				
측 량 연 월 일	2010. 1. 6.				
측량성과보관장소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비 고	신설설치				

지적도근점(보70~보72, 1658~1688)

기준점구분	기준 점명	평면직각중형선수치		설치일자	설치 구분	표지 구분	기준점 소재지
		중선좌표	횡선좌표				
지적삼각보조점	보70	415347.26	181137.63	2010.1.6	신설	표석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58
지적삼각보조점	보71	414856.03	180618.67	2010.1.6	신설	표석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475-11
지적삼각보조점	보72	415593.44	179951.25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609-5
지적도근점	1658	415751.88	180095.14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71
지적도근점	1659	415618.69	180137.72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582-25
지적도근점	1660	415374.73	180300.00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594-5
지적도근점	1661	415182.96	180322.11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596-8
지적도근점	1662	415056	180460.25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589-5
지적도근점	1663	414987.83	180573.12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589-5
지적도근점	1664	414975.54	180679.27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6-3
지적도근점	1665	415036.81	180715.99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71
지적도근점	1666	415094.5	180732.58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71
지적도근점	1667	414948.9	180778.44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71
지적도근점	1668	415111.03	180889.22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71
지적도근점	1669	415190.41	180946.42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71
지적도근점	1670	415164.5	180865.05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540-1
지적도근점	1671	415153.33	180837.59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71
지적도근점	1672	415310.02	180998.52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
지적도근점	1673	415286.83	180947.07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548
지적도근점	1674	415253.86	180895.89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550-4
지적도근점	1675	415220.91	180843.71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551-22
지적도근점	1676	415182.83	180793.11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551-1
지적도근점	1677	416183.61	180246.39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4
지적도근점	1678	416032.8	180139.87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474-24
지적도근점	1679	415980.32	180181.37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68
지적도근점	1680	416526.36	180246.02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6
지적도근점	1681	416630.04	180232.22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1-2
지적도근점	1682	416777.62	180241.53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423-5
지적도근점	1683	416913.48	180318.87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66
지적도근점	1684	417014.1	180587.09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33-2
지적도근점	1685	417081.14	180530.97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411
지적도근점	1686	416993.76	180438.05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412-2
지적도근점	1687	416885.4	180240.33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784-27
지적도근점	1688	416721.43	180111.84	2010.1.6	신설	표철	정선군 남면 무릉리 431-23

정선군고시 제2010-171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정선군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2.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회계별 /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총 계	354,875,590	336,195,248	18,680,342	5.56%
일반회계	318,837,332	302,148,830	16,688,502	5.52%
기타특별회계	27,253,976	25,522,406	1,731,570	6.78%
의료급여기금	586,291	586,291	0	0.00%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341,719	341,719	0	0.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41,987	41,987	0	0.00%
기반시설부담금	568,895	568,895	0	0.0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623,068	623,068	0	0.00%
주택사업	130,121	130,121	0	0.00%
주차장	641,479	641,479	0	0.00%
수질개선	24,320,416	22,588,846	1,731,570	7.67%
상수도사업	8,784,282	8,524,012	260,270	3.05%

정선군고시 제2010-172호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고시

정선군의 2011년도 당초예산이 제1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2.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회계별 / 구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감	증감율
총 계	278,238,300	301,688,378	△23,450,078	△7.77%
일반회계	245,527,244	268,708,529	△23,181,285	△8.63%
기타특별회계	25,156,739	24,671,869	△484,870	△1.97%
의료급여기금	592,060	562,444	29,616	5.27%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302,109	323,793	△21,684	△6.7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52,334	41,987	10,347	24.64%
기반시설부담금	78,289	572,925	△494,636	△86.34%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26,253	600,000	△273,747	△45.62%
주택사업	20,220	110,196	△89,976	△81.65%
주차장	207,000	782,137	△575,137	△73.53%
수질개선	23,578,474	21,678,387	1,900,087	8.76%
상수도사업	7,554,317	8,307,980	△753,663	△9.07%

정선군고시 제2010-177호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7.

정 선 군 수

I. 건 명 :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신축건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3) 경과년수별 잔가율
- 4) 가감산특례
- 5)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사항 : 2011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과 같음

II. 건 명 :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 30,796종

- 1)정의 2)용어해설 3)시가표준액 4)과표적용요령 5)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 10,156종

- 1)정의 2)종류 3)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4)시가표준액
- 5)적용요령 6)산출예시

다. 선 박 : 139종

-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내용년수 및 감가율
- 4)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5)시가표준액 적용방법

라. 항 공 기 : 220종

-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표 5)적용방법

마. 시 설 물 : 1,612종 (부수시설물 401종)

1)용어정의 2)종류 3)내용연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적용방법

바. 입 목 : 21종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종류 4)시가조사방법 5)시가표준액 6)적용방법

사. 기 타 :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골프·콘도)

※ 해당 물건별로 고시

2. 세부사항 :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720호

2011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2011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0. 12. 20.

정 선 군 수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공고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제공하오니 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 근무기간 : 2011년 1월 ~ 9월 (9개월)
- ☐ 근무시간 : 주 11시간 근무 (월 44시간)
- ☐ 보수 등 : 월 20만원 (산재보험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 ☐ 모집기간 : 2010. 12. 27(월) ~ 2011. 01. 14(금) 09:00~18:00 (토·일 제외)
- ☐ 모집분야 : 주차단속요원 3명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가산점 부여
 - 타 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단,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간헐적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가능),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은 선발에서 제외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 재산세증명원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경로복지담당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Tel.560-2976)

5. 기타 문의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서식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에서 수령하거나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경로복지팀(560-29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모집공고

우리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로 근무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 근무기간 : 2011년 1월 ~ 12월 (12개월)
- ☒ 근무시간 : 월~목,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 근무내용 : 장애인복지행정 관련 업무보조 등
- ☐ 근무지 : 정선군 소재 읍·면사무소
- ☐ 보수 : 월779,900원
(4대 사회보험료 가입여부에 따라 보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 모집인원 : 8명(정선군내 읍·면사무소 배치)
- ☐ 모집기간 : 2010.12.27(월) ~ 2011.01.14(금)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산점 부여
 - 타 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은 선발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도우미로 참여시 기초생활 수급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참여 신청시 신중히 결정하기 바람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 재산세증명원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경로복지담당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Tel.560-2976)

5. 기타 문의사항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하거나 정선군 홈페이지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경로복지팀(Tel. 560-29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개 인 용)

		접수번호		기입하지 않음	
신청분야	☐ 복지일자리		☐ 일반형 ☐ 교육-복지연계형		
	☐ 장애인행정도우미		☐ 일반형 ☐ 전담보조형		
	☐ 시각장애인안마사		☐ 일반형		
사 진	성 명		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 남 ☐ 여
	주 소				
가 족 관 계	☐ 부 ☐ 모 ☐ 배우자 ☐ 형제 ☐ 자녀 (장애가족구성원: 명)				
주 거 형 태	☐ 자택 ☐ 전세 ☐ 월세 ☐ 기타		기초생활 수급권자	☐ 예 ☐ 아니오	
월 생활비용 (동거가족)	☐ 30만원미만 ☐ 30~50만원 ☐ 50~80만원 ☐ 80~100만원 ☐ 100만원 이상				
등록장애 유형 및 등급	(급)	이동수단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주요경력사항	(~)				
	(~)				
직업 훈련	훈련원명	1-1.	2-1.		
	훈련기간	1-2. ~	2-2. ~		
	훈련직종	1-3.	2-3.		
자격면허	1) 2)	전산 능력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일자리사업 참 여 경 험	☐ 무 ☐ 유 (정부부처: 기간: 일자리내용)				
희망근무지역	①		②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붙임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재산세증명원, 관련자격증 사본 각1부.

정선군공고 제2010-738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어천제축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23.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어천제 축제공사
2. 사업시행자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성 명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수용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2-9 (2-2)	대지	24	전홍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2-10 (2-3)	전	46	전홍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합계	2필지		70					

4. 열람공고기간 : 2010. 12. 23. ~ 2011. 1. 7.(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5. 기타사항 :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 033-560-2481)에 비치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739호

2011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고용창출 확대를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0. 12. 27.

정 선 군 수

1. 선발인원 : 29명

가. 사업내용 및 읍·면별 선발인원

구 분	사업내용	선발인원	비 고
계	2개 분야	29명	
생산성사업	공중화장실관리 녹지조성 등	24명	정선읍3명,고한읍3명,사북읍3명, 화암면3명, 남 면3명,여량면3명, 북평면3명, 임계면3명
서비스지원사업	급식지원도우미	5명	신동읍5명

2. 신청자격

가. 연 령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나.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사업참여 자격 배제 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3. 제출서류 및 접수

가. 제출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나. 접수기간 : 2011. 1. 17 ~ 2011. 1. 21(5일간)

다. 제 출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담당 부서)

4. 선발방법 : 서류심사

5. 합격자 발표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부서

6. 사업기간 및 조건

가. 사업기간 : 2011. 2. 1 ~ 6. 30(5개월)

나. 조 건 : 1일 8시간 주5일(월~금)

다. 수 당 : 1일 35,000원, 주·월차수당, 교통간식비 별도지급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산업경제과(033-560-2154) 또는 읍·면 산업개발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743호

사회복지법인 강원랜드복지재단 2011년 예산편성 현황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랜드복지재단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 12. 28.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10. 12. 28. ~ 2011. 1. 16. (20일간)

2. 장 소 : 군청 게시판,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2011년도 강원랜드복지재단 예산현황

4. 기타사항

가.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560-2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1년도 강원랜드복지재단 예산편성현황

2011년도 강원랜드복지재단 예산총괄표

1. 세입

(단위:원)

관	항	목	2010예산	2011예산	증감
			(A)	(B)	(B)-(A)
총 계			7,176,490,603	6,970,098,840	△206,391,763
재산수입	기본재산	소 계	1,018,000,000	950,000,000	△68,000,000
	수 입	이자수입	1,018,000,000	950,000,000	△68,000,000
보조금	후원금	소 계	4,003,000,000	5,002,040,000	999,040,000
수 입		일반후원금	4,000,000,000	5,000,000,000	1,000,000,000
		지정후원금	3,000,000	2,040,000	△960,000
이월금	이월금	소 계	1,738,193,603	700,000,000	△1,038,193,603
		전기이월금	1,769,705,193	700,000,000	△1,069,705,193
		전기미지급금의 지급(△)	14,821,980	-	(△14,821,980)
		전기에수금의 지급(△)	16,689,610	-	(△16,689,610)
상환금	상환금	소 계	47,400,000	8,400,000	△39,000,000
		주거안정자금상환금	47,400,000	8,400,000	△39,000,000
잡수입	잡수입	소 계	369,897,000	309,658,840	△60,238,160
		법인세환급금	184,600,000	178,482,840	△6,117,160
		기타예금이자수입	108,500,000	85,000,000	△23,500,000
		기타잡수입	76,797,000	46,176,000	△30,621,000

2. 세출

(단위:원)

관	항	목	2010예산	2011예산	증감	
			(A)	(B)	(B)-(A)	
총 계			7,176,490,603	6,970,098,840	△206,391,763	
사무비	인건비	합 계	516,021,000	462,702,000	△53,319,000	
		급 여	345,390,000	309,336,000	△36,054,000	
		특별상여금	76,500,000	66,000,000	△10,500,000	
		퇴직금및적립금	37,000,000	30,500,000	△6,500,000	
		사회보험분담금	35,110,000	35,754,000	644,000	
		기타후생경비	22,021,000	21,112,000	△909,000	
	업 무	합 계	14,400,000	14,400,000	-	
		추진비	기관운영비	8,400,000	8,400,000	-
			직책보조비	6,000,000	6,000,000	-
	회의비	합 계	43,200,000	43,200,000	-	
		회 의 비	43,200,000	43,200,000	-	
	운영비	합 계	82,060,000	79,780,000	△2,280,000	
		여 비	23,400,000	23,760,000	360,000	
		교육훈련비	11,700,000	11,700,000	-	
		수용비 및 수수료	37,160,000	37,120,000	△40,000	
		제세공과금	5,000,000	-	△5,000,000	
		공공요금	4,800,000	7,200,000	2,400,000	
	재 산 조성비	시설비	합 계	56,200,000	44,000,000	△12,200,000
			차량유지비	40,800,000	36,600,000	△4,200,000
			자산취득비	13,000,000	5,000,000	△8,000,000
시설장비유지비			2,400,000	2,400,000	-	

사업비	합 계		6,018,000,000	6,202,040,000	184,040,000
	진폐지원	소 계	1,900,000,000	2,000,000,000	100,000,000
	사업	재가진폐지원사업	950,000,000	1,150,000,000	200,000,000
		진폐재활지원사업	300,000,000	200,000,000	△100,000,000
		타폐광지역진폐사업	650,000,000	650,000,000	-
	이동복지	소 계	1,247,000,000	1,430,000,000	183,000,000
	사업	방문복지사업	700,000,000	930,000,000	230,000,000
		의료지원사업	547,000,000	500,000,000	△47,000,000
	소외계층	소 계	1,938,000,000	1,810,000,000	△128,000,000
	지원사업	희망의집수리사업	600,000,000	600,000,000	-
		행복일자리사업	538,000,000	550,000,000	12,000,000
		지역복지특화사업	700,000,000	600,000,000	△100,000,000
		장애인오투기캠프사업	100,000,000	60,000,000	△40,000,000
	복지역량	소 계	800,000,000	850,000,000	50,000,000
	강화사업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600,000,000	650,000,000	50,000,000
		사회복지인교육지원사업	200,000,000	200,000,000	-
	홍보연구	소 계	133,000,000	112,040,000	△20,960,000
	사업	홍보사업	80,000,000	60,000,000	△20,000,000
		후원결연사업	3,000,000	2,040,000	△960,000
		정책개발연구사업	50,000,000	50,000,000	-
잡지출	잡지출	합 계	18,000,000	18,000,000	-
		잡 지 출	18,000,000	18,000,000	-
예비비	예비비	합 계	428,609,603	105,976,840	△322,632,763
		예 비 비	428,609,603	105,976,840	△322,632,763

정선군공고 제2010-752호

압류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11. 1. 13일까지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폐차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0. 12. 30.

정 선 군 수

다 음

1. 공고기간 : 2010. 12. 30 ~ 2011. 01. 13(15일간)

2. 공고대상

대상 자동차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자동차 등록원부상 송달지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77더4625	무쏘	정병현	저당설정	LG카드(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3. 문 의 처 : 정선군 건설도시과 교통행정팀 (033-560-2454)

정선군공고 제2010-753호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2. 30.

정 선 군 수

1.제정취지

-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수질평가를 군민의 입장에서 한층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정선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와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3.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109)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전화 560-2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기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수도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수처리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754호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2. 31.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2. 개정이유

가. 기금의 회계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읍·면장으로 지정하고 기금출납원을 재난업무담당과 읍면총무담당주사로 지정하여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회계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는 규정을 개정(안제8조제1항)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위촉에 관한사항 중 민간전문가 위원 위촉기준을 추가함(안제9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전화 560-2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를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 으로 한다.

제4조 중 “정선군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정선군금고” 로 한다.

제6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장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읍·면 총무담당주사

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 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정선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 - 호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2. 31.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록·보존하는 각종 장부의 명칭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조례의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관련 장부의 명칭 변경(안제9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전화 560-2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을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를 “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 로 한다.

제2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으로 하고, “지방세법” 을 “ 「지방세법」 ” 으로 한다.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난관리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